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2020. 06.

대 회 집 행 위 원 회

[문 제]

- 주식회사 스덴(원고 1)과 대표이사 이철남(원고 2)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피고 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피고 2), 스덴산업 지회장 김분기(피고 3)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들 또는 피고들을 대리하게 될 변호사다.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사실관계는 3-5쪽 [사실관계]와 같고, 이 사실관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단 본 문제에서 청구단일화 절차 준수 여부 및 스덴산업 지회의 법인격은 쟁점 아님).

- 원고들 또는 피고들은 6쪽 이하의 첨부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노동 소속 변호사인 여러분을 찾아와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다.

- 여러분들은 다음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1. 원고 또는 피고 중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하였음을 전제로 할 것
 2. 전 항에 따라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각 1부씩 작성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는 대법원 규칙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여 15장 이내로 작성하되, 대회규정 “11. 서면 작성 방법”을 준수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의 당사자 표시는 이름만을 기재할 것
 - 주어진 사실관계 및 첨부자료 이외의 가정적 사실관계를 상정하지 말 것

[유의사항]

- 공고에 제시된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 소장, 답변서 등 수행 과제의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할 것
- 제출하는 소장 또는 답변서의 이름은 “법무법인 노동 담당변호사 김두섭”으로 기재하되, 그 성명 옆에 괄호로 참가 팀의 참가번호를 기재하고,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원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는 “2020가합23874 손해배상(기)”, 서면 작성일자는 2020. 7. 5. 로 할 것
-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대회연도-경연단계-지위-참가번호” 순으로 붙일 것
(예시 : 2020-서-피고-5001)
-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

[사실관계]

(주)스덴은 1990. 5. 5. 스테인레스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바, 2010년 경 스테인레스 제품을 제조하는 부천시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

(주)스덴은 이 사건 공장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중 제품의 검수 및 포장 공정을 (주)스덴의 대표이사인 이철남의 배우자 박철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스덴산업이라는 개인기업에 사내하도급을 주었고, 스덴산업은 상시 1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스덴으로부터 수급한 제품 검수 및 포장 업무(이하 “이 사건 도급업무”라고 함)를 처리하여 왔다.

김분기 등 120여 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함)은 2010년 경부터 스덴산업에 고용되어 이 사건 도급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8.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스덴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7. 1.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 선고 2018가합717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 이에 (주)스덴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8. 1.에 모두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함)에 가입하고(위원장 최창수), 같은 달 10. 이 사건 노조 스덴산업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함)를 조직하였다(지회장 김분기).

위 지회장 김분기는 이 사건 지회 설립 직후인 2019. 9. 1. 이 사건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고, (주)스덴을 상대로 ‘(주)스덴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

접고용할 것'을 의제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나, (주)스덴은 자신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회가 요청한 단체교섭에 응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지회장 김분기는 지회 규약에 따라 2019. 9. 30. 이 사건 지회의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단체교섭의 진행 경위(원청의 교섭거부 의사)를 보고하고 원청인 (주)스덴에 대한 쟁의행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주일 동안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전체 조합원의 80%가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단 쟁의 조정절차와 관련해 스덴산업지회는 2019. 9. 11.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주)스덴의 불참으로 인해 2019. 9. 17.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19. 11. 1.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주)스덴의 본사 사옥 1층의 로비 공간 일부를 점거하고, 1주일간 본사 사옥 부근에서 (주)스덴의 단체교섭 수용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쟁의행위의 개시일 3일 전인 2019. 10. 27.에 (주)스덴 측에 FAX로 통보하였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스덴산업의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모두 스덴산업에 2019. 11. 1.부터 3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을 신청하고, 2019. 11. 1.에 (주)스덴의 본사 사옥 1층의 로비 공간 일부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본사 사옥의 실내외에 현수막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과 로비 바닥에 유성 페인트가 묻었으며, 로비 공간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주)스덴의 직원의 채증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훼손되었고, 로비의 출입문에 부착된 자동문센서 등 자동문이 훼손되었다. 또한, 쟁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동원된 (주)스텝의 직원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서로 전치 2주의 경상을 당하였다.

한편, 본사 부근에서 진행된 문화제에서는 (주)스텝의 대표이사 이철남과 스텝산업의 영업주이자 이철남의 배우자인 박철녀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 마누라에게 일감몰아주기로 회사 돈을 빼돌린 이철남 사장은 개잡놈이다. 이철남 사장 니놈이 갈 곳은 감옥 뿐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A5 용지 크기의 유인물 1,000장을 배포하였다.

이에 (주)스텝, 이철남은 이 사건 노조, 이 사건 지회, 김분기 지회장을 상대로 인테리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총 2억 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단 쟁의기간 중 발생한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서울시 강남구 민주길 3, 15층 (단결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제 목 : (주)스덴 비정규직 불법파견 1심 전원 승소

담 당 : 지회장 김분기(010-2121-3232) 사무국장 김세희(010-2121-4343)

수석부지회장 신인수(010-2121-5454)

2019. 7. 1. (주)스덴 불법파견 소송 1심 전원 승소

-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사수!! 정론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사 노동담당 기자 동지들 감사드립니다!!
-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스덴산업이 (주)스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킨 스덴산업 소속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주)스덴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즉,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은 근로자 파견계약이었다는 것이고, 파견금지 업종이므로 파견법에 따라서 즉시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서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 금지 업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주)스덴은 전형적인 제조업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는 스테인레스 제품 직접생산공정업무다. 그래서 법원은, (주)스덴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입사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증거번호 1]

- 특히 (주)스텝 대표이사 이철남과 스텝산업 대표이사 박철녀는 부부관계다. 가족끼리 불법파견 일감 몰아주기로 폭리를 취하고 노동자를 착취한 범죄사건이다.
- (주)스텝과 스텝산업은 소송과정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축소·은폐했으며,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착취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주)스텝과 스텝산업의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 (주)스텝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잇따른 불법파견 비정규직 승소판결들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범죄가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들이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은 파견법상 처벌 대상이다(4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우리의 요구 :
불법파견 범죄자 (주)스텝 이철남, 스텝산업 박철녀를 구속처벌하라!
(주)스텝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주)스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서울시 강남구 민주길 3, 15층 (단결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스덴 (대표이사 이철남)

일 시 : 2019. 9. 1.

제 목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담 당 : 지회장 김분기(010-2121-3232) 사무국장 김세희(010-2121-4343)

수석부지회장 신인수(010-2121-5454)

1.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귀 회사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이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스덴산업 지회는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 : 단체협약 체결

나. 일시 : 2019년 10월 첫째 주 중

다. 장소 : 회사 또는 노조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

라. 위원명단 : 추후 통보. 끝.

(주) 스 텡 서울시 서초구 자본길 1, 10층 (부자빌딩) 전화 (02) 8282-2222	
보내는 사람	(주)스텡 (대표이사 이철남)
받는 사람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텡산업 지회
제목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답변
보내는 날짜	2019. 9. 8.

1. 귀 노동조합의 2019. 9. 1.자 공문(내용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2. 본 회사는 지난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3. 본 회사는 귀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스텡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이유가 추호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서울시 강남구 민주길 3, 15층 (단결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2019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확정 공고

노조 규약 71조에 의거,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7일까지 실시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구분	재적 조합원	투표 인원	찬성	반대	무효	투표율	찬성율		비고
							재적 조합원 대비	투표 인원 대비	
계(명)	120	100	96	2	2	83.33%	80%	96%	가결

2019. 10. 7.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서울시 강남구 민주길 3, 15층 (단결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스덴 (대표이사 이철남)

일 시 : 2019. 10. 27.

제 목 : 쟁의행위 예고 통지

담 당 : 지회장 김분기(010-2121-3232) 사무국장 김세희(010-2121-4343)

수석부지회장 신인수(010-2121-5454)

1.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는 2019. 7. 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2019. 9. 1.자로 귀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귀 회사는 2019. 9. 8.자 회신에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는 2019. 9. 30. 지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귀 회사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쟁의행위 필요성을 통감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4.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2019. 10. 1.부터 2019. 10. 7.까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전체 조합원 120명 중 투표 100명, 찬성 96명으로 전체 조합원 80%(투표 조합원 96%)의 압도적 지지로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가결되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 별첨]

5. 이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텝산업 지회는 2019. 11. 1.부터 1주일 간 귀 회사 본사 사옥 1층 로비 및 본사 건물 주변 등에서 단체교섭 수용을 촉구하는 문화제, 선전전 등의 쟁의행위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 통지합니다.

6. 본 쟁의행위는 적법절차에 의거해 진행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바 이에 대하여 귀 회사의 방해나 개입이 있을 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위하여 조속히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다신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 지회

서울시 강남구 민주길 3, 15층 (단결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제 목 : (주)스덴의 악질적인 교섭 거부를 끝장내기 위한 문화제 개최!!

담 당 : 지회장 김분기(010-2121-3232) 사무국장 김세희(010-2121-4343)

수석부지회장 신인수(010-2121-5454)

2019. 11. 1. 스덴산업지회 투쟁문화제 개최!

**조합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요구에 주식회사 스덴은 즉시 응답하라!!**

-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사수!! 정문직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사 노동담당 기자 동지들 감사드립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 선고 2018가합717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 스덴은 이른바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주식회사 스덴은 스덴산업에서 근무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지회의 조합원들에 대해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존재함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 하지만 대표이사 이철남을 비롯한 몰상식한 경영진 일가는 파렴치하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스덴산업지회는 주식회사 스덴에 단체교섭 요구를 함으로써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의 굴레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스덴은 우리 스덴산업지회의 교섭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스덴의 파렴치한 태도로 인해 우리 스덴산업 동지들은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 9. 30. 부터 1주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우리 조합원 동

지들은 80%라는 압도적인 찬성율을 보이며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2019. 11. 1. 부터 3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 나아가 2019. 11. 1. 에는 직접고용을 위한 조합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와 연대해주시는 시민동지들과 함께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120명, 시민동지들 80여명이 참여하는 투쟁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언론사 노동담당 기자동지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고용 쟁취!! 진짜 사장 주식회사 스텡이 나와라!! 스텡산업지회 투쟁문화제 -

- 일시 : 2019. 11. 1. 금요일 18:30 ~ 20:30
- 장소 : 주식회사 스텡 본사 사옥 앞 (서울시 서초구 자본길 1 부자빌딩 앞 도로)
- 행사 순서

- 민중의례
- 여는 발언 : 스텡산업지회 수석부지회장 신인수
- 연대 발언 (1)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서희원
- 연대 발언 (2) : 간접고용철폐투쟁연대 공동의장 최혜인
- 연대 발언 (3) : 함께가자 민중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신선아
- 문화 공연 (1) : 민중가수 조민지 - “비정규직의 애환” 등 3개 곡 공연 예정
- 문화 공연 (2) : 민중 몸짓패 “김하경과 건설노동자들” - 30 분 가량 공연 예정
- 마무리 발언 : 스텡산업지회 사무국장 김세희
- 결의문 낭독 : 스텡산업지회 지회장 김분기 대표 낭독 예정

사실 확인서

이 름 : 강 성 회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노동길 3 민주아파트 301호

연 락 처 : 010-5678-8765

저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텡산업지회 조직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인 바, 2019. 11. 1. 스텡산업 지회의 파업 당시, 구사대의 폭력과 거짓말에 대항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주식회사 스텡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 선고 2018가합71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모두 주식회사 스텡 소속 직원들이다, 주식회사 스텡이 그야말로 불법파견을 자행했다. 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저희들의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저희들로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로비에 연좌해 우리들의 주장을 밝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스텡산업 소속 직원이다! 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님들의 중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상 스텡산업 본사에서 저희들의 주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2019. 11. 1. 저희들은 파업을 시작하며 본사 로비에서 스텡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간 연좌 농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증거번호 7]

그런데 저희들의 절박한 호소에 돌아온 것은 구사대의 폭력이었습니다. 회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 저희들이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구사대 직원들을 팻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열려 있는 자동문을 향해 차분히 들어갔을 뿐, 그 과정에서 자동문 센서가 고장났느니 뭐니하는 말은 주식회사 스덴 설비의 결함이었을 뿐입니다.

특히 구사대 직원들은 저희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걸 그야말로 거짓말입니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 조합원들입니다. 2019. 11. 1. 13:00 경 상황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조합원들이 절박한 요구를 외치려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소문난 악질 구사대, 인사팀 하태승 대리가 20여명 구사대 직원들을 데리고 와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태승 대리는 평소에도 노조를 경멸하고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을 일삼는 스덴 자본의 하수인인 바, 이날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생각나는 발언으로 “항소심에서도 너희들이 이길 것 같아?” “너희들은 끝까지 하청이야” “비정규직이 어디 우리 회사에 들어와”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으면 시험쳐서 들어와 이 염치없는 놈들아” 이런식으로 우리를 조롱한 기억이 납니다. 하태승 대리는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의 구사대 직원이었는데 제가 “이런식으로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을 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자 제 목살을 잡더니 저를 매우 강하게 밀쳐 제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억이 납니다. 그 때 허리가 심하게 삐끗했었는데 병원에 가니 전치 2주의 요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제가 폭력당하는 모습을 보고 수석부지회장 신인수, 사무국장 김세희 동지가 놀라 뛰어오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홍보부장 동지, 김성훈 조합원 역시 옆에 있었던 다른 구사대 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당해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거번호 7]

그 구사대 직원 역시 매우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수소문해서 찾아보니 인사팀 이수열 대리라고 합니다. 이수열 대리 역시 하태승 대리와 평소 몰려다니며 스텡산업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성 발언을 일삼던 악질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주식회사 스텡은 그야말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스텡은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 설치하는 과정에서 페인트가 묻어 대리석 교체, 벽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2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날 제 기억으로 대리석 바닥에 페인트가 그렇게 많이 묻었는지 의문입니다. 대리석을 전면 교체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사측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언론 인터뷰에 출현한 하태승 대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금 말씀 드리지만 폭행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하태승 대리입니다. 그리고 하태승 대리는 앞뒤 사정을 다 잘라먹고 저희들이 캠코더를 부숴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뒤를 잘라먹은 말입니다. 당시 하태승, 이수열 대리를 비롯한 구사대 직원들은 “시험쳐서 우리회사 들어와 비정규직 녀석들아” 라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들을 불법채증하려 했습니다. 당시 우리 조합원들은 하태승과 구사대의 불법채증에 대항하기 위해 하태승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일어난 일로 우리가 캠코더를 뺏아서 던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진술은 모두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진 술 인 강 성 회

진술서

이 름 : 하 태 승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돌담길 3 향경신문아파트 501호

연 락 처 : 010-4321-1234

1. 저는 2015. 3. 1. 주식회사 스텡에 입사해 현재 주식회사 스텡의 인사팀 대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 11. 1. 스텡산업 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본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스텡산업 지회 소속 조합원들, 즉 스텡산업 소속 근로자들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스텡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불법과건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아니며, 주식회사 스텡은 상소를 통해 끝까지 실제적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즉 현재 상황으로는 스텡산업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주식회사 스텡 사이의 불법과건 관계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텡산업 지회는 주식회사 스텡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스텡으로서는 위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인사노무 전문 로펌의 자문을 받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증거번호 8]

다. 만약 스텡산업 지회가 정당한 단체교섭 권한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면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충분히 정당한 방법을 통해 저희와 법리적 논쟁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텡산업 지회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돌연 전면파업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히더니만, 마침내 2019. 11. 1. 자로 주식회사 스텡 본사의 로비를 전면 점거하였습니다. 법학에 대해 무지한 저로서도, 스텡산업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내지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중차대한 불법행위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 주식회사 스텡으로서는 스텡산업 지회의 로비 침탈을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스텡산업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주식회사 스텡산업 사이에는 그 어떠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식회사 스텡 본사 로비를 침탈하려는 스텡산업 지회의 불법행위에 맞서 인사팀 대리인 저는 스텡산업 지회 노조원들을 막아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6. 이에 2019. 11. 1. 저는 13:00 경 본사 앞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하는 것을 목격하고 인사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인 대리 이수열, 정병민, 황규수 등과 함께 본사 정문에서 조합원들의 불법 침입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경한 스텡산업 지회 조합원들의 침탈 시도에 연약한 저희들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7. 저희는 13:00 경 로비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인 자동문을 시건하였습니다. 그러

[증거번호 8]

나 스텡산업 지회 조합원 중 선두에 위치해있던 30 ~ 40 여명의 조합원들이 몰려와 자동문 5개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이후 시설관리팀을 통해 외주업체에 확인한 결과 최첨단 자동문 인식 센서 등 자동문이 손상되어 수리비용으로 3,700 만원이 소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8. 스텡산업 지회 조합원들은 자동문을 강제로 연 이후 로비로 고성을 지르며 로비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마누라에게 일감 몰아주는 이철남 사장은 개잡놈이다”, “이철남 사장은 감옥에나 가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진입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석부지회장 신인수, 사무국장 김세희라는 사람이 선두에서서 100여명의 조합원들을 이끌며 본사로 진입하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9. 저는 인사팀 동료 직원들인 대리 이수열, 정병민, 황규수들과 스텡산업 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진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스텡산업 소속 직원 여러분, 여기는 주식회사 스텡의 본사 사옥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단체교섭이 필요하시다면 법원을 통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우리 자동문을 부수고 로비를 점거하려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므로 자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10. 저희들이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텡산업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저희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스텡산업의 조합원들 몇몇은 저희들을 밀치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으며 몇몇 조합원들은 저희들에게 직접적인

[증거번호 8]

폭력을 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명찰을 패용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그 날이 구체적으로 기억납니다. 조직부장 강성희라는 조합원은 제 다리를 발로 차 지금까지도 제 왼쪽 발목과 허벅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습니다. 홍보부장 김성훈이라는 조합원은 제 동료 직원 이수열 대리의 팔뚝을 발로 차 이수열 대리 역시 아직까지 왼쪽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정병민 대리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에게 수차례 맞아 여기저기 시퍼런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저와 인사팀 직원들인 이수열, 정병민, 황규수 대리는 병원에 가보니 모두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1. 스텡산업 지회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인사팀 직원들은 스텡산업 지회의 폭력행위에 속수무책 물러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스텡산업 지회 소속 노조원들 100여명은 본사를 점거하고 여기저기 현수막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성페인트를 대리석 로비 바닥 및 벽에 여기저기 묻이는 등 시설의 손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설관리팀 소속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로비 바닥 대리석 전면 교체 공사, 벽면 페인트 인테리어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① 대리석 교체 작업에 8500만원이 ② 벽면 페인트 인테리어 작업에 4000만원이 소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12. 또한 스텡산업 지회 노조원들은 저희 주식회사 스텡이 마련한 고가의 캠코더 장비 5대를 손괴하였습니다. 저와 이수열, 정병민, 황규수 대리 등은 노조원들의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 총무팀을 통해 고가의 캠코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스텡산업 지회 조합원들이 로비를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캠코더 장비를 모두

[증거번호 8]

부셔버렸습니다. 손괴된 캠코더 장비는 “희애카메라”에서 출시된 개당 200만의 최신 고가 장비였습니다.

13. 마지막으로 스텡산업 지회는 문화제 과정에서 저희 회사와 사장님 일가를 극심하게 모욕한 점을 강조드립니다. 스텡산업 지회는 18:30 경 본사 사옥 앞에서 조합원들 120여명, 그리고 소속을 알수 없는 성명불상자들 80여명과 함께 고성 노래를 틀며 불법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법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니 수석부회장 신인수, 사무국장 김세희라는 자가 이철남 사장님과 배우자인 박철녀 사모님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 마누라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돈을 빼돌린 이철남 사장은 개잡놈이다”, “이철남 사장 네놈이 갈 곳은 감옥 뿐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을 전해들으신 이철남 사장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진술은 모두 사실과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스텡
인사팀 대리
하 태 승

[증거번호 9]

견 적 서		
주식회사 스텝 귀중		주식회사 주아인테리어 서울 동작구 갑산길 3 대안빌딩 2층 대표이사 박주아
총 공사금액 : 일금 일억삼천만원정		
항목	면적	공사 금액 합계
로비 바닥면 대리석 공사		
천연 대리석	1652.892m2	85,000,000
벽면 페인트 작업 공사		40,000,000
기타 인건비 등 공사비 (노역인부 5인, 10일간 공사 예정)		5,000,000
합 계		130,000,000
견적담당자 : 장제현 부장(02-3333-2222), 대금결제 조건 : 협의, 견적 유효기간 : 3개월		

[증거번호 9]

견 적 서				
주식회사 스덴 귀중		주식회사 한백자동문 서울 서초구 방배동 노총길 3 여는빌딩 2층 대표이사 박한백		
총 공사금액 : 일금 삼천칠백만원정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합계
정문 자동문				
자동감지센서 (at-870-ef-7)	18*300	5	1,000,000	5,000,000
외부 틀	1856*3000	5	2,000,000	10,000,000
강화 유리 도어	1800*2800	5	4,000,000	20,000,000
공사비				2,000,000
합 계				37,000,000
견적담당자 : 이윤미 부장(02-2222-1111), 대금결제 조건 : 협의, 견적 유효기간 : 3개월				

간접고용 철폐!! 직접고용 쟁취!!

법원 판결에도 불복하고 비정규직 강요하는 주식회사 스덴 각성하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지회

[증거번호 10] 지회 현수막

진짜사장 이철남이 나와라!!

불법파견 자행한 주식회사 스덴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답하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덴산업지회

스텝 공장의 70%는 모두 비정규직?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불법파견 즉시 중단하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스텝산업지회

[증거번호 10]

지회 유인물

불법파견 주동자 이철남이 갈 곳은 감옥 뿐이다!!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717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 스덴의 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둘!! 스덴산업은 주식회사 스덴의 사장 이철남의 배우자 박철녀가 운영하는 위장도급회사다!!

셋!!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철남은 직접고용은 커녕 교섭요구에조차 불응하고 있다!!

넷!! 스덴산업을 통한 위장도급은 이철남의 마누라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자본의 악질적인 그리고 파렴치한 일탈이다!!

다섯!! 스덴산업 지회는 직접고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전국금속산업노조 스덴산업지회